



선 람	기 관 의 장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2-13 2020. 12. 30.(수)**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94호) ----- 3
- 하천·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97호) ----- 4

**공 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2호) ----- 7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3호) ----- 8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4호) ----- 9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5호) ----- 94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6호) ----- 9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7호) ----- 104

## 발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77호) ----- 106
- 부산광역시 금정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78호) ----- 120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79호) ----- 1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직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80호) ----- 1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81호) ----- 13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82호) ----- 135

<b>회람</b>								
-----------	--	--	--	--	--	--	--	--

발행 : 부산광역시 금정구

편집 : 문화관광과(☎519-407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94호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9-168(2019.10.8.)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56(2020.4.15.)호로 변경(정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61호(2020.11.1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금정구(공원녹지과 519-4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2. 사업명칭 : 정든 금사마당 조성사업
3. 사업위치 : 금정구 금사동 360-2번지, 360-8번지, 367-2번지
4. 사업규모 : A=325㎡(주민 쉼터조성)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고시일 ~ 2020. 12. 31.
  - 변경 : 2020. 11. 12. ~ 2021. 3. 31.
7. 사업비 : 120백만원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3필지)				325	325						
1	금정구 금사동	360-2	대	160	160	부산광역시 금정구					
2	금정구 금사동	360-8	대	76	76	부산광역시 금정구					
3	금정구 금사동	367-2	대	89	89	부산광역시 금정구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97호

## 하천·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 허가사항

연번	성명	주소	목적	위치	면적(m <sup>2</sup> )	유효기간	비고
1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단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안락동)	차집시설 제어반 설치	부곡동 399외 1개소	6	영구	온천천 (하천 제2020-24호)
2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단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안락동)	차집시설 제어반 설치	장전동 427 외 1개소	3.4	영구	온천천 (하천 제2020-25호)
3	금정구 자원순환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오수관 매설	구서동 936-8	26	2020.1.1.~ 2025.12.31.	온천천 (하천 제2020-26호)
4	지○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주차장	구서동 78-7	234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3호
5	○○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공장부지	구서동 997-3	280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4호
6	하○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2327 번안길	진출입로	노포동 1114-4	18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5호

연번	성명	주소	목적	위치	면적(m <sup>2</sup> )	유효기간	비고
7	황○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장1길	주거	노포동 1119-13	59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6호
8	강○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25번길	주거	서동 599-11	7.3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7호
9	서○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주거	서동 599-69	23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8호
10	김○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주거	서동 599-64	8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29호
11	박○주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오례1길	주거	서동 599-64	4.5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0호
12	이○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주거	서동 599-64	16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1호
13	이○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주거	서동 599-64	21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2호
14	홍○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주거	서동 599-64	2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3호
15	성○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대지	장전동 541-1	48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4호
16	박○득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9번길	우오수관 매설	장전동 646-6, 646-3	1.4/0.2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5호
17	양○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우수관 매설	장전동 656-7	0.63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6호
18	이○태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맨홀 설치 및 우오수관 매설	장전동 656-7	2.26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7호

연번	성명	주소	목적	위치	면적(m <sup>2</sup> )	유효기간	비고
19	이○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진출입로	장전동 657-6	179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8호
20	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주거	장전동 682	13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39호
21	김○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주거	청룡동 577-32	24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40호
22	김○옥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원지로22번 길	진출입로	회동동 531-1	160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41호
23	김○옥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원지로22번 길	진출입로 및 대지	회동동 531-1	292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42호
24	(주)부산 도시가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남천동)	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회동동 540-8	0.11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43호
25	(주)부산 도시가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남천동)	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회동동 540-8	0.28	2020.1.1.~ 2025.12.31.	공유수면 제2020-4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없으면”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촉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제27조제2항에”을 “제27조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충원계획”을 “충원계획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 시험에”를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를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로, “공동이용으로”를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을 “정보통신망에 따

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를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중이거나”를 “중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재로 한다.”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실시할 때에는”을 “실시함에 있어서”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2항 본문에”를 “제27조제2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같은 조 제3항 중 “출장을 갈”을 “출장할”로, “경우에는”은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를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을 요구할 때”를 “시험 요구 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를 “졸업한 사

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현재로”를 “현재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그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전직시험이 면제되는”을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급”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5급”으로 한다.

-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4조제2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제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17과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을 따른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을 “인사운영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 중 “계속”을 “성실하게”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입  
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  
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b>산림</b></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b>산림</b></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b>산림</b></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b>방재</b></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b>방재</b></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b>방재</b></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업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치과기공사(12) 방사선동위치료사(12) 임상소취(특수) 급사(5) 임상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사서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치료사(8) 급사(3) 방사선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사서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치료사(5) 급사(3) 방사선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사서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급사(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숙 기	숙기			한글숙기 12급(5)	한글숙기 123급(2)	한글숙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 (삭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표 5의3]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산	업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산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	명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농	촌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b>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b> )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b>기계설계</b> )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b>보건의료정보관리사(5)</b> ,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수의사
		가	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	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	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	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촌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풀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 업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로				
	해양교통				
	시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b>보건의료정보관리사</b>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건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b>보건의료정보관리사</b>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5급이상			6·7급			8·9급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방지) 위생사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b>방재</b>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b>방재</b>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b>방재</b>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b>방재</b>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교통, 지질및지반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p><b>비고</b></p> <p>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p> <p>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p>				

[별표 7의4]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b>설비</b>,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b>소방설비(기계분야)</b></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b>기계조립</b>, <b>생산 자동화</b>,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b>에너지관리</b>, <b>철도차량</b>, <b>철도운송</b>, 자동차정비, 건설기계<b>설비</b>,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b>배관</b>, <b>산업안전</b>,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b>소방설비(기계)</b></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b>가공</b>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b>에너지관리</b>,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b>건설기계정비</b>,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b>자동차정비</b>, 건설기계<b>설비</b>,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b>철도차량</b>, 자동차정비, 건설기계<b>설비</b>, 건설기계정비, <b>궤도장비</b>,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b>가공</b>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b>철도차량정비</b>, <b>철도운송</b>,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b>불도저운전</b>, 천장크레인운전, <b>로더운전</b>, <b>롤러운전</b>, <b>모터그레이더운전</b>,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b>판금제관</b>,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 증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 관리사</p>

공 업	조 선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b>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b>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b>소방설비(전기분야)</b>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b>소방설비(전기분야)</b>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b>에너지</b>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b>금속재료</b>,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공 업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b>종자, 식물보호</b>,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b>식품가공</b>, 유기농업, 화훼장식</p>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b>토양환경</b>, 산림,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유기농업          산업기사 : <b>종자, 식물보호</b>,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b>종자, 시설원예</b>,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능 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p> <p>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p>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 술 사 방사선관리</p> <p>기 사 : 의공</p> <p>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p> <p>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경	수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3급</p>
	대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기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설계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통신기술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전송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편제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화학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농업		

농업연구 농촌지도	원 예 원 예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b>토양환경</b>, 조경,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농업환경	<p>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b>토양환경</b>,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b>식물보호</b>,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p>	
	산업곤충	<p>기사 :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b>토양환경</b>,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b>식물보호</b>,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식품,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촌생활	<p>기술사 : <b>섬유</b>,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b>농어업토목</b>,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p> <p>기사 : <b>섬유</b>,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b>바이오화학제품제조</b></p> <p>산업기사 : <b>섬유</b>,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p>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p>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b>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b>,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b>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p> <p>산업기사 : <b>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p>기술사 : 조경, 종자, <b>산림, 농화학</b></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b>임산가공</b></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b>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p>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b>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b></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b>어로, 수질환경, 식품</b></p>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b>기술사</b> : 수산양식, 수질관리 <b>기사</b>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b>산업기사</b>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b>기술사</b> : 해양, 어로, 수질관리 <b>기사</b>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b>산업기사</b>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b>기술사</b> : 수산제조, 식품 <b>기사</b>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b>산업기사</b>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b>기술사</b>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b>인간공학</b> <b>기사</b>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b>산업기사</b>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b>임상심리사 1급</b> <b>임상심리사 2급</b>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b>보건 의료정보관리사</b> ,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b>기술사</b> : <b>화공</b>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b>기사</b> : <b>화공</b> , 조경, <b>산림</b> , <b>식물보호</b> , <b>해양환경</b>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b>산업기사</b> : <b>조경</b> , <b>산림</b> , <b>식물보호</b> , <b>농림토양평가관리</b> ,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b>기술사 :</b>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b>교통, 광해방지</b></p> <p><b>기사 :</b>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b>철도토목</b>,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b>교통, 광해방지</b></p> <p><b>산업기사 :</b>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b>철도토목</b>,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b>교통</b></p>	
농촌지도	농업토목	<p><b>기술사 :</b>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b>교통</b></p> <p><b>기사 :</b>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b>교통</b></p> <p><b>산업기사 :</b>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b>교통</b></p>	
시설연구	건축	<p><b>기술사 :</b>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b>기능장 :</b>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b>기사 :</b>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b>산업기사 :</b>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b>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b>, 건설안전, <b>소방설비</b></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녹 지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농 업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시 설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측 지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전 기		농 업 기 계
	전 차		기 계 운 전
	금 속		일 반 전 기
	섬 유		전 차
	화 공		금 속
	화 학		섬 유
	물 리		화 공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농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농 업 경 영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촌 사 회
	축 산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촌 지 도	축 산
	농 공	공 업	농 업 기 계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녹지연구	임 조 업 경	임 업	전 직 류
		농 촌 지 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재 난 관 리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렬	도 직 류	기 직 렬	술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경
	잠 업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총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 공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5]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5급~9급)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재경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재경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전산	데이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툴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류	직류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이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선박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상하수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토목운영	토목운영			<p><b>기술사</b>(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b>기사</b>(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p>	<b>산업기사</b>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건축운영			<p><b>기술사</b>(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b>기능장</b>(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b>기사</b>(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건축사</p>	<b>산업기사</b>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p><b>기술사</b>(전자응용, 정보통신)</p> <p><b>기능장</b>(전자기기, 통신설비)</p> <p><b>기사</b>(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p>	<b>산업기사</b> (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운영	전기운영			<p><b>기술사</b>(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b>기능장</b>(전기)</p> <p><b>기사</b>(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b>산업기사</b>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운영	기계운영			<p><b>기술사</b>(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b>기능장</b>(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b>기사</b>(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b>산업기사</b>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영사운영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화공운영	화공운영			<p>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위험물, 가스)</p> <p>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농림운영	영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p>
보건운영	보건운영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p> <p>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 2.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근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 ※1999.3.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영양사, 위생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간호사, 조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 3.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잠업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 ※1999.3.27이전 취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영양사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시행일 : 2022. 1. 1.]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6조제2항 관련)

## 1. 교류직위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부산시역 외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 부터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1.20점 - 부산시역 내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 부터 1개월마다 0.02점 부여, 최대 0.48점

## 2.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 이상 근무한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실·국·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전문분야 보직(도시안전) 실적가점과 중복부여 불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0.75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제26조제3항 관련)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① 업무추진 실적우수	1. 현안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는 직원 ▷ 매년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의선정된 과제 ▷ 구 현안과제(목표관리) ▷ 실·국 현안과제(자체평가)	0.3점 0.2점	· 1년 단위로 주요업무자체평가 위원회에서 목표달성 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가점 부여 · 사무분장 및 평가결과 기준으로 담당직원에게 가점부여 ※ 전년도 실적은 다음 해 4월 30일 기준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연1회)
	2.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단위 및 시단위의 평가 등을 통해 기관 포상을 받은 부서의 직원 ▷ 중앙단위 ① 최우수상 ② 우수상 ③ 장려상 ▷ 시 단위 ① 최우수상 ② 우수상 ③ 장려상	0.4점 0.3점 0.2점 0.3점 0.2점 0.1점	·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에만 인정 · 수상부서에서 6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인정 · 포상구분이 없을 경우 포상 훈격으로 부여 (대통령 : 0.3, 국무총리 : 0.2, 장관 : 0.1, 시장 : 0.1)
	3. 저서출판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① 저서출판 ② 논문게재	0.2점 0.1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 및 논문만 인정(학위논문 제외) · 저서 및 논문은 각각 1회만 인정
	4.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급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직원	1회당 0.2점	· 교육 중 발표 제외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적 가점으로 인정된 경우
	5. 기피(격무) 팀(직무) 내 근무자	0.48점	· 6개월이상 기피(격무)팀(직무) 근무자 월 0.08점씩 누적가산
② 업무관련 창안	정부제안규정 및 시·구제안규칙에 의하여 담당업무관련 제안 채택된 직원 ① 금상 ② 은상 ③ 동상 ④ 장려상 ⑤ 노력상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개인포상 및 승진자에 대해서는 가점 제외
③ 세수(歲收) 증대 및 예산절감	1. 경영수익사업 시행, 업무개선 등으로 세수(歲收)증대 및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직원 ① 10억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점 (1억원당 0.1점)	·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사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그 실적이 인정된 경우(단, 격려금 대상자는 제외)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2. 예산절감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받은 직원	포상금 수령액 100만원당 0.05점	·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포상금의 가점은 세무7급 이하만 적용
	3. 감사원, 중앙부처 및 자체감사 결과 예산절약 금액이 인정된 직원 ① 10억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점 (1억원당 0.1점)	·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직원에 한하여 인정
④ 업무유공 개인포상 수상	1. 훈장 2. 포장 3. 대통령 표창 4. 총리표창 5. 장관, 시장표창 6. 구청장 표창	1.0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받은 포상만 인정 · 평정단위 기간 내 포상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가점이 제일 높은 것 1개만 인정
⑤ 새로운 업무발굴 및 업무 개선 등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업무의 발굴 시행 또는 업무개선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를 거양한 직원	0.5점 이하	· 사업성과 등에 대한 검토 후 타 항목의 가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가점부여 ·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부문 등에서 대상항목이 변경된 사항도 동일하게 심사
⑥ 다자녀 출산우대	다자녀 출산 직원 ① 3자녀 ② 4자녀이상	0.2점 0.3점	· 평정단위 기간 내 출생신고가 된 경우 가점부여
⑦ 체납액 징수	1.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 - 10건 이상 체납자중 100만원 이상 체납액의 징수(5천만원 이상) 2.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5천만원 이상)	0.2점 0.2점	· 체납액 징수에 직접 기여한 직원에 한하여 인정
⑧ 국시비 확보 우수	국시비 확보 우수 직원 및 팀장	0.2점	· 국·시비 확보 우수부서(직원) 평가(기획감사실) 결과에 따라 선정 ※ 전년도 실적은 다음 해 4월 30일 기준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연1회)
⑨ 적극행정 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0.5점 이하	· 선발 후 다음 평정 시 반영하며, 선발 심의 위원회에서의 인센티브 결정에 따라 부여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 응시원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b>응시표</b> (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④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 응시원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인)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입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①	①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금정구청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가치 이해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답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 년 월 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가치 이해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 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    속	성    명	총 평 정 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안전과 분장사무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기관)명	분 장 사 무
도시안전과	79.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소규모)
	89.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분장사무란 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기관)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28. 온천천·수영강 하천관리(녹지, 환경정비)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직급별·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b>총 계</b>		793	508	16	45	36	188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789	504	16	45	36	188
3급 소계		1	1	0	0	0	0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서 기 관		3	2	1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5	21	2	4	2	16
행정사무관		28	14	2	0	1	11
시설(토목)사무관		1	1				
시설(건축)사무관		1	1				
시설(지적)사무관		1	1				
사서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2			2		
녹지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7	2				5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1		
행정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환경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1				
<b>6급 소계</b>		205	160	4	6	5	30
행정주사		122	98	3	1	4	16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1				
행정주사·보건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세무주사		18	18				
사회복지주사		15	10				5
시설(토목)주사		6	6				
시설(건축)주사		3	3				
시설(지적)주사		2	2				
공업(전기)주사		2	2				
방송통신주사		1	1				
전산주사		1	1				
환경주사		1	1				
보건주사		1	1				
보건주사 또는 식품위생주사		1	1				
녹지주사		2	2				
간호주사		2			2		
사서주사		3	2			1	
농업주사		0	0				
보건주사·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보건주사·약무주사,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0		1			9

직급별.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등
행정주사 또는 시설(토목)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시설(건축)주사		2	2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	1		0		
행정주사 또는 녹지주사		2	2				
운전주사		3	3				
사무운영주사		1	1				
전화상담운영주사		1	1				
<b>7급 소계</b>		<b>228</b>	<b>151</b>	<b>4</b>	<b>13</b>	<b>10</b>	<b>50</b>
행정주사보		88	52	3	2	3	28
세무주사보		10	10				
사회복지주사보		43	21				22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시설(건축)주사보		1	1				
시설(토목)주사보		12	12				
시설(건축)주사보		13	13				
시설(지적)주사보		4	4				
공업(전기)주사보		4	1			3	
공업(기계)주사보		3	3				
공업(화공)주사보		2	2				
방송통신주사보		4	3			1	
전산주사보		3	3				
환경주사보		3	3				
농업주사보		1	1				
녹지주사보		3	3				
간호주사보		7			7		
보건주사보		4	3		1		
의료기술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4	2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3	3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건축)주사보		1	1				
행정주사보, 시설(토목)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1				
행정주사보 또는 녹지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1	1				
시설(토목)주사보 또는 시설(건축)주사보		1	1				
운전주사보		6	6		0		
전화상담운영주사보		0	0				
기계운영주사보		1				1	
통신운영주사보		1		1			
<b>8급 소계</b>		<b>236</b>	<b>120</b>	<b>4</b>	<b>21</b>	<b>12</b>	<b>79</b>
행정서기		101	46	1	3	3	48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3	3				
행정서기 또는 시설(건축)서기		2	2				
세무서기		10	10				
사회복지서기		41	14				27
시설(토목)서기		9	9				
시설(건축)서기		4	4				
시설(지적)서기		3	3				
공업(전기)서기		2	1			1	

직급별·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등
공업(기계)서기		3				3	
공업(화공)서기		2	2				
방송통신서기		3	2			1	
전산서기		5	4			1	
환경서기		1	1				
농업서기		1	1				
녹지서기		4	4				
간호서기		10			10		
보건서기		6	2		4		
의료기술서기		3			3		
사서서기		5	2			3	
속기서기		2		2			
행정서기 또는 시설(토목)서기		1	1				
행정서기 또는 사회서기		3	2				1
보건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1				
방재안전서기		2	2				
운전서기		2	1		1		
사무운영서기		4		1			3
기계운영서기		1	1				
전기운영서기		1	1				
열관리운영서기		1	1				
<b>9급 소계</b>		<b>69</b>	<b>48</b>	<b>1</b>	<b>0</b>	<b>7</b>	<b>13</b>
행정서기보		29	22			1	6
세무서기보		7	7				
사회복지서기보		6					6
시설(토목)서기보		3	3				
시설(건축)서기보		2	2				
시설(지적)서기보		3	3				
공업(전기)서기보		3	3				
공업(기계)서기보		1				1	
환경서기보		1	1				
농업서기보		1	1				
녹지서기보		1	1				
보건서기보		2	2				
사서서기보		5	1			4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1					1
방재안전서기보		1	1				
운전서기보		1		1			
사무운영서기보		1	1				0
기계운영서기보		1				1	
<b>연구직 계</b>		<b>1</b>	<b>1</b>	<b>0</b>	<b>0</b>	<b>0</b>	<b>0</b>
기록연구사		1	1				
<b>별정직 계</b>		<b>2</b>	<b>2</b>	<b>0</b>	<b>0</b>	<b>0</b>	<b>0</b>
비서요원(6급상당)		1	1				
비서요원(7급상당)		1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5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도시안전과】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 결 구 분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2.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			○		
	2.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자재 수불대장	★	○				
	3. 학교, 병원, 공공건물의 수용	★				○	
	4. 토지, 가옥 또는 물자 사용	★				○	
	5. 물자 보관 명령	★			○		
	6. 물자 보관장소 검사 및 보고	★		○			
	7. 응급조치 종사명령	★			○		
33.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접수	★		○			
	3. 기계설비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		○			

별표 1 【공원녹지과】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 결 구 분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5. 온천천·수영강 하천관리(녹지, 환경정비)	1. 온천천·수영강 녹지 및 환경정비 종합계획 수립		★				○
	2. 온천천·수영강 녹지시설 설치	★			○		
	3. 온천천·수영강 녹지시설 관리 (수목관리, 시설정비, 인력관리 등)	★		○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안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

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마. 구정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

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심사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구청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 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 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실험,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

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

### 제3장 제안의 시상 등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은상 :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3. 동상 :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4. 장려상 :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제안장려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안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을 채택하거나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권리의 승계 등

제17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금정구가 승계한다.

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

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2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 구청장은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9조제3항 관련)

## 1. 세부심사내용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	· 행정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계속성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범위	· 전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실시 가능성	· 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 2.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창의성 (20)		획기적인 착상(20)	다소 독창적(16)	보통(12)	일부 모방(8)	전부 모방(4)
능률성 또는 경제성(30)	능률성 (30)	매우 크다(30)	다소 크다(24)	보통이다(18)	약간 있다(12)	없다(6)
	경제성 (30)	5억원 이상(30)	3억원 이상(24)	1억원 이상(18)	5천만원 이상(12)	5천만원 미만(6)
계속성 (15)		10년 이상(15)	5년 이상(12)	3년 이상(9)	1년 이상(6)	1년 미만(3)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15)	다수 행정기관(12)	우리구 소속 모든 행정기구(9)	소속 실·국(6)	소속 부서(3)
실시 가능성 (20)		즉시 가능(20)	1년 이내(16)	2년 이내(12)	3년 이내(8)	3년 이상(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917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를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77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2, 별표 3, 별표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 본청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제3조 관련)

부서명	직급	직렬	정원
<b>본청</b>	<b>계</b>		<b>508</b>
기획감사실	소계		24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9
	6급	세무직	1
	7급	행정직	5
	7급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또는 세무직	1
	7급	시설(토목)직	1
	8급	행정직	5
<b>총무국</b>			
총무과	소계		44
	정무직	정무직	1
	3급	행정직	1
	4급	행정직	1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7
	6급	사회복지직(일반임기제)	1
	6급	운전직	3
	7급	행정직	7
	7급	사회복지직	0
	7급	운전직	6
	8급	행정직	7
	8급	운전직	1
	9급	행정직	1
	9급	행정직(일반임기제)	5
	6급	별정직	1
	7급	별정직	1
	문화관광과	소계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7
7급		행정직	4
7급		시설(건축)직	1
7급		행정직(일반임기제)	1
8급		행정직(일반임기제)	2
9급		행정직	2
평생교육과	소계		2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6
	6급	사서직	2
	7급	행정직	5
	7급	사서직	2
	7급	공업(기계)직	1
	8급	행정직	0
8급	사서직	2	

부 서 명	직급	직 렬	정원	
	8급	전산직	1	
	8급	행정직(일반임기제)	1	
	9급	사서직	1	
재무과	소계		26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6	
	6급	전산직	1	
	6급	공업(전기)직	1	
	6급	방송통신직	1	
	6급	전화상담운영직	1	
	7급	행정직	1	
	7급	행정직 또는 세무직	1	
	7급	전산직	3	
	7급	방송통신직	2	
	7급	전화상담운영직	0	
	8급	행정직	2	
	8급	전산직	2	
	8급	방송통신직	1	
	8급	기계운영직	1	
	8급	열관리운영직	1	
	9급	공업(전기)직	1	
	세무1과	소계		24
		5급	행정직	1
6급		세무직	9	
7급		세무직	5	
7급		행정직 또는 세무직	1	
8급		세무직	5	
9급		세무직	3	
세무2과	소계		24	
	5급	행정직	1	
	6급	세무직	8	
	7급	세무직	5	
	8급	행정직	1	
	8급	세무직	5	
	9급	세무직	4	
민원봉사과	소계		2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8	
	7급	행정직	4	
	8급	행정직	6	
	8급	전산직	1	
	9급	행정직	1	
	기록연구사	연구직	1	
<b>복지경제국</b>				
사회복지과	소계		19	
	4급	행정직	1	
	5급	행정직	0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부 서 명	직급	직 렬	정원
	6급	행정직	4
	6급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6
	7급	사회복지직 또는 시설(건축)직	1
	8급	행정직	2
	9급	행정직	1
여성가족과	소계		2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5
	6급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0
	7급	행정직	3
	7급	사회복지직	5
	8급	행정직	1
	8급	사회복지직	4
	8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9급	행정직	1	
생활보장과	소계		33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2
	6급	사회복지직	7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0
	7급	행정직	1
	7급	사회복지직	9
	8급	행정직	0
	8급	사회복지직	10
	8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9급	행정직	2	
일자리경제과	소계		20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7
	6급	농업직	0
	7급	행정직	2
	7급	공업(화공)직	1
	7급	농업직	1
	8급	행정직	3
	8급	농업직	1
	9급	행정직	3
9급	농업직	1	
자원순환과	소계		17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7
	7급	행정직	3
	7급	공업(기계)직	1
	7급	환경직	1
	7급	운전직	0
8급	행정직	1	

부 서 명	직급	직 렬	정원
	8급	행정직(일반임기제)	1
	8급	운전직	0
	9급	행정직	1
	9급	사무운영직	1
환경위생과	소계		25
	5급	환경직 또는 보건직	1
	6급	행정직	2
	6급	행정직 또는 보건직	1
	6급	보건직	1
	6급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1
	6급	환경직	1
	7급	행정직	1
	7급	공업(화공)직	1
	7급	환경직	2
	7급	보건직	3
	7급	보건 또는 식품위생직	1
	7급	행정 또는 시설(토목) 또는 환경직	1
	8급	보건 또는 식품위생직	1
	8급	환경직	1
	8급	공업(화공)직	2
	8급	보건직	2
	9급	보건직	2
	9급	환경직	1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계		30
	4급	기술직	1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5
	6급	공업(전기)직	1
	6급	시설(토목)직	1
	6급	운전직	0
	6급	사무운영직	1
	7급	행정직	1
	7급	시설(토목)직	1
	7급	공업(전기)직	1
	7급	운전직	0
	7급	방송통신직	1
	8급	행정직	4
	8급	시설(토목)직	1
	8급	공업(전기)직	1
	8급	방송통신직	1
	8급	방재안전직	2
	8급	전기운영직	1
	9급	행정직	1
	9급	시설(토목)직	1
	9급	시설(건축)직	1
9급	공업(전기)직	2	
9급	방재안전직	1	

부 서 명	직급	직 렬	정원
	9급	운전직	0
	소계		19
도시재생과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4
	6급	시설(토목)직	1
	6급	행정직 또는 시설(건축)직	1
	7급	행정직	1
	7급	행정직(일반임기제)	1
	7급	시설(토목)직	2
	7급	시설(건축)직	3
	8급	행정직	2
	8급	시설(건축)직	1
	9급	행정직	2
		소계	
교통행정과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9
	6급	행정직 또는 세무직	1
	6급	행정직 또는 시설(토목)직	1
	6급	운전직	0
	7급	행정직	4
	7급	시설(토목)직	1
	7급	공업(기계)직	1
	8급	행정직	3
	8급	행정직 또는 세무직	3
	8급	행정직 또는 시설(토목)직	1
	8급	사무운영직	0
	8급	운전직	0
	소계		30
건설과	5급	시설(토목)직	1
	6급	행정직	4
	6급	시설(토목)직	4
	7급	행정직	4
	7급	시설(토목)직	7
	8급	행정직	0
	8급	시설(토목)직	8
	9급	시설(토목)직	2
	소계		26
건축과	5급	시설(건축)직	1
	6급	행정직	1
	6급	시설(건축)직	3
	6급	행정직 또는 시설(건축)직	1
	7급	행정직	0
	7급	시설(건축)직	9
	7급	행정직 또는 시설(건축)직	1
	7급	시설(토목)직 또는 시설(건축)직	1
	8급	행정직	2
	8급	행정직 또는 시설(건축)직	2
	8급	시설(건축)직	3

부 서 명	직급	직렬	정원
	8급	사회복지직	0
	9급	행정직	1
	9급	시설(건축)직	1
공원녹지과	소계		17
	5급	녹지직	1
	6급	행정직	2
	6급	녹지직	2
	6급	행정직 또는 녹지직	2
	7급	행정직 또는 녹지직	1
	7급	녹지직	3
	7급	운전직	0
	8급	행정직	1
	8급	녹지직	4
	9급	녹지직	1
	토지정보과	소계	
5급		시설(지적)직	1
6급		행정직	3
6급		시설(지적)직	2
7급		행정직	2
7급		시설(지적)직	4
8급		행정직	2
8급		시설(지적)직	3
9급		행정직	1
9급	시설(지적)직	3	

[별표 2]

의회사무국 직급별·직렬별 정원(제3조 관련)

부 서 명	직급	직렬	정원
의회사무국	계		<b>16</b>
	4급	행정직	1
	5급	행정직	2
	6급	행정직	3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3
	7급	통신운영직	1
	8급	행정직	1
	8급	속기직	2
	8급	사무운영직	1
	9급	운전직	1

[별표 3]

## 보건소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제3조 관련)

부서명	직급	직렬	정원
보건소	계		45
보건행정과	소계		25
	4급	기술(보건,의무,간호)직	1
	5급	행정직·보건직 또는 약무직	1
	5급	의무직(일반임기제)	2
	6급	보건직 또는 약무직 또는 의료기술직	1
	6급	보건직 또는 약무직 또는 의료기술직 또는 간호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보건직	0
	7급	행정직	2
	7급	간호직	1
	7급	보건직	1
	7급	의료기술직	2
	7급	보건직 또는 약무직	1
	7급	운전직	0
	8급	행정직	2
	8급	간호직	2
	8급	보건직	4
	8급	의료기술직	3
	8급	운전직	0
건강증진과	소계		20
	5급	행정직·의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1
	6급	행정직·보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1
	6급	간호직	2
	7급	간호직	6
	8급	행정직	1
	8급	간호직	8
	8급	운전직	1

[별표 4]

## 사업소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제3조 관련)

부서명	직급	직렬	정원
사업소			<b>36</b>
금정도서관	소계		<b>18</b>
	5급	사서직	1
	6급	행정직	2
	6급	사서직	1
	7급	행정직	1
	7급	사서직	2
	7급	공업(전기)직	1
	8급	행정직	1
	8급	사서직	3
	8급	전산직	1
	8급	공업(기계)직	1
	9급	사서직	4
	금정문화회관	소계	
5급		행정직(일반임기제)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일반임기제)	1
7급		행정직	2
7급		공업(전기)직	2
7급		방송통신직	1
7급		기계운영직	1
8급		행정직(일반임기제)	2
8급		공업(기계)직	1
8급		공업(기계)직(일반임기제)	1
8급		공업(전기)직(일반임기제)	1
8급		방송통신직(일반임기제)	1
9급		행정직	1
9급		공업(기계)직	1
9급	기계운영직	1	

[별표 5]

## 동 직급별·직렬별 정원(제3조 관련)

부서명	직급	직렬	정원
<b>동별</b>	<b>계</b>		<b>188</b>
서 1 동	소계		11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1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2
	8급	사회복지직	2
	9급	행정직	1
	9급	사회복지직	0
서 2 동	소계		12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1
	6급	사회복지직	1
	7급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1
	8급	사회복지직	3
	8급	행정직	3
	9급	행정직	1
	9급	사무운영직	0
서 3 동	소계		1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3
	8급	사회복지직	2
금사회동동	소계		11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3
	8급	사회복지직	1
부곡1동	소계		11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1
	6급	사회복지직	1

부서명	직급	직렬	정원
	7급	행정직	1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3
	8급	사회복지직	3
	9급	사회복지직	0
부곡2동	소계		1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4
	8급	사회복지직	1
	9급	사회복지직	1
부곡3동	소계		1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3
	8급	사회복지직	2
	8급	사무운영직	1
	9급	사회복지직	0
부곡4동	소계		1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2
	8급	사회복지직	1
	8급	사무운영직	1
	9급	사회복지직	1
장전1동	소계		12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3
	8급	사회복지직	2
	9급	행정직	1
	9급	사회복지직	0
장전2동	소계		14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1

부 서 명	직급	직렬	정원
	6급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3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3
	8급	사회복지직	3
	9급	사회복지직	0
선두구동	소계		7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7급	행정직	1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1
	8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9급	행정직	1
9급	사무운영직	0	
청룡노포동	소계		11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2
	8급	사회복지직	1
	8급	사무운영직	1
	9급	사회복지직	1
남산동	소계		17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1
	6급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2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5
	8급	사회복지직	3
	9급	행정직	1
	9급	사회복지직	1
구서1동	소계		13
	5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행정직	1
	6급	사회복지직	1
	7급	행정직	1
	7급	사회복지직	1
	8급	행정직	5
	8급	사회복지직	2
	9급	사회복지직	1
구서2동	소계		15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부 서 명	직급	직렬	정원
	7급	행정직	3
	7급	사회복지직	2
	8급	행정직	4
	8급	사회복지직	1
	9급	행정직	1
	9급	사회복지직	1
금성동	소계		6
	5급	행정직	1
	6급	행정직	1
	7급	행정직	1
	8급	행정직	2
	9급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7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 본청 부서, 보건소, 사업소 및 동에 설치하는 팀

(제2조 관련)

부서(기관)명	팀수	팀명							
계	131								
기획감사실	5	기획	미래비전	예산	법무규제	감사			
총무과	5	총무	조직노무	자치행정	구민지원	차량관리			
문화관광과	4	문화예술	관광진흥	문화재	공보				
평생교육과	4	평생학습	교육지원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재무과	4	경리	재산관리	통신정보	전산정보				
세무1과	4	세무관리	재산세	취득세	세외수입징수				
세무2과	4	세입과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정리				
민원봉사과	4	통합민원	기록관리	가족관계등록	여권				
사회복지과	3	복지기획	희망복지	어르신복지					
여성가족과	4	여성가족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아동보호드림				
생활보장과	4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장애인복지				
일자리경제과	4	일자리창출	청년지원	고용지원	경제산업				
자원순환과	4	자원순환행정	폐기물관리	오수정화	재활용				
환경위생과	5	기후환경정책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문화			
도시안전과	5	안전관리	재해예방	민방위	도로정비	기전설비			
도시재생과	4	도시재생기획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	광고물				
교통행정과	5	교통행정	자동차관리	주차문화개선	주차시설	주차과징			
건설과	5	건설행정	토목1	토목2	하천	도시계획			
건축과	5	건축지도	건축허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지원	재개발			
공원녹지과	4	공원행정	도시녹화	자연생태	산림관리				
토지정보과	3	토지행정	지적	도로명주소					
보건행정과	3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건강증진과	3	가족건강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					
도서관	2	관리	열람						
문화회관	2	관리	공연						
의회사무국	2	의정	의사						

부서(기관)명	팀수	팀명								
서 1 동	2	행정민원	복지							
서 2 동	2	행정민원	복지							
서 3 동	2	행정민원	복지							
금 사 회 동 동	2	행정민원	복지							
부 곡 1 동	2	행정민원	복지							
부 곡 2 동	2	행정민원	복지							
부 곡 3 동	2	행정민원	복지							
부 곡 4 동	2	행정민원	복지							
장 전 1 동	2	행정민원	복지							
장 전 2 동	2	행정민원	복지							
선 두 구 동	1	행정민원								
청 룡 노 포 동	2	행정민원	복지							
남 산 동	2	행정민원	복지							
구 서 1 동	2	행정민원	복지							
구 서 2 동	2	행정민원	복지							
금 성 동	1	행정민원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79호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 외 시간은 출입구를 폐쇄한다.

제4조제2호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 외 시간은 출입구를 개방한다.

제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감면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적용하며, 요금 감면을 원하는 자는 감면요금 적용 시간 내에 감면 요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주차요금(제5조 관련)

구분	시간제 주차	1일 주차	정기주차
부설주차장 (옥내·옥외)	10분마다 500원	15,000원	-

※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 문화회관 소속 직원 및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월 정기주차 10,000원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80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민간인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 또는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

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3.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정원관리, 전환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4. “예산부서”란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및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공무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사무원 : 행정지원과 자료 집계, 사무기록의 유지 관련 등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사서·상담·의료 등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도로관리원 : 도로의 보수,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환경관리원 :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녹지관리원 : 공원·녹지·산림의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제5조(정원채정 요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해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채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면 그 결원에 대하여 계속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원관리부

서의 장에게 결원보충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채정 승인) ①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채정 및 결원보충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직무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정원채정 승인통보에 따라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의 총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정원의 관리)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채정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
2.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줄이도록 할 것
3.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줄이도록 할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줄이도록 할 것

제9조(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표(제7조 관련)

직종별 부서별	계	공 무 직				청원경찰
		실무사무원	도로관리원	환경관리원	녹지관리원	
<b>계</b>	<b>134</b>	<b>36</b>	<b>18</b>	<b>64</b>	<b>5</b>	<b>11</b>
총 무 과	5	1				4
평생교육과	1					1
사회복지과	4	4				
여성가족과	5	5				
생활보장과	3	3				
일자리경제과	1	1				
자원순환과	65	1		64		
도시안전과	18		18			
도시재생과	2	2				
건 축 과	1					1
공원녹지과	5				5	
의회사무국	1	1				
보건행정과	4	4				
건강증진과	9	9				
금정도서관	8	5				3
금정문화회관	2					2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채정(결원보충) 요구서					
직 종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등 인원	공무원 정 원			공무원 외 인력 정 원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업 무 량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재 원					
향후대책					
<p>「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 채정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관리부서의 장 : (인)</p> <p>금정구청장 귀하</p>					

※ 직종별 : 공무직(실무사무원, 도로관리원, 환경관리원, 녹지관리원), 청원경찰로 구분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 책정(결원보충) 승인서				
직 종				
채용목적				
인원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용일자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 출 기 초
	급 여			
	운영비			
승인조건				
기타사항				
<p>「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 책정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금 정 구 청 장</p> <p>(관리부서의 장) 귀 하</p>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결원보충)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되었기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관리부서의 장) 귀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8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조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단위(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외출, 지각, 조퇴)로 허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50조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훈령 제38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 또는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 및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임용권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말한다.

## 제2장 인사

제3조(채용) ①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한 부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하면 그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공고 및 방법) 청원경찰의 채용공고, 채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보관·관리) ①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청원경찰의 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6조(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관리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복직) 관리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이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복직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을 총괄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
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신분증명서) ①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신규채용·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원관리부서에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신분증명서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장 복무

제12조(성실 의무) 청원경찰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복장 및 용모) ① 청원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복장 및 용모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복종의 의무) 청원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5조(직장 이탈 금지) 청원경찰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7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청원경찰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원경찰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관리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분장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관리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게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3. 교대 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및 유기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간에는 관리부서 장의 지휘 아래 조장의 지시로,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책임자”이라 한다)의 지휘 아래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5.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당직책임자)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당직책임자)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관리부서의 장은 청사방호 목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장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이 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감독자 선정 및 임무)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원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보고
3. 근무자의 일일명령과 근무일지 작성 및 조원의 근무상태 수시 지도
4. 근무조의 근무 전반에 대한 책임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제21조(출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

지 아니한다.

② 청원경찰의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휴가) 청원경찰의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근무상황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경찰이 직접 서명 또는 등록을 하는 출근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24조(장비의 운영)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며, 관리

부서별로 동일하여야 한다.

제26조(제복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동절기와 하절기의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반팔 상의, 점퍼,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착용한다.

#### 제4장 표창과 징계

제27조(표창)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①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후생복지

제29조(후생복지)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30조(안전과 보건) 청원경찰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

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재직(경력) 증명서

인 사 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재 직 경 력 사 항	소속		
	직명		
	재직기간	. . . . .부터 . . . . .까지( . . . . .년 . . . . .월)	
용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